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9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허성무 · 김남희
문진석 · 윤종균 · 김성희
정태호 · 이주희 · 김우영
이용우 · 남인순 · 백승아
한준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에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이나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심리지원 대상에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).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
4.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심리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0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수의사에게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 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(이하 이 조에서 “심리지원”이라 한 다)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 다.	제15조의2(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20 조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 해를 입은 사람
<u><신 설></u>	4. 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에 따 른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 은 수의사
3. (생 략)	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